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18. 8. 28.(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 자	• 조사관 김병곤, 사무관 최희동, 주무관 김영권 • ☎ (044)200-6122, 6125	
보 도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안전한 해양레저 즐기기, 사례로 배운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레저선박 사고 사례집 제작·배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레저선박* 운항자들이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호버크라프트(공기부양선박), 수면비행선박

최근 선박을 이용한 레저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레저선박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대부분 충돌사고로 인하여 발생('16년 12명, '17년 40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저선박 등록척수(척)		레저선박사고(건)		레저선박사고 인명피해(명)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16,618	19,494	315	449	13	56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레저선박 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8건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법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선박 운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항행법규까지 하나로 묶어 책자로 제작하였다.

사례집에서는 대형 외항선이 주로 출입하는 전국 31개 무역항의 수상 구역 안과 밖에서 레저선박에 적용되는 주요 항행법규*를 그림으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급박한 충돌 위험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운 대형 상선의 조종특성에 대한 설명과, 음주 후 조타기 조작 금지규정, 선박등록·승선정원 규정, 해양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 안전한 레저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내용을 함께 담았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의 항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과 밖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법 - 「해사안전법」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는 총 6,000부가 제작되며, 「수상 레저안전법」에 따른 전국의 수상안전교육 제공단체* 등을 통해 레저선박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배포할 계획이다.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외양요트협회 및 한국해양소년단 등 총33개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레저선박과 같은 작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의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라며, “이번에 배포하는 책자에 수록된 사고사례, 예방법 및 관련 항법규정 등이 레저선박 운항자의 해양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 안전 길잡이

○ 레저선박 운항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항법

- | | |
|---|--|
|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의 항법
<small>「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p. 26 절조)</smal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피항선이란 <제2조> 2. 우선피항선의 징류 및 징박 <제5조 제3항> 3. 항로 지정 및 항로에서의 항법 <제10조, 제12조> 4. 우선피항선의 진로방해금지원칙 <제16조> |
|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과 밖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법
<small>「해사안전법」 (p. 27-28 절조)</smal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일반원칙 <제6장 제1절> 2.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좁은수로 <제6장 제1절> 3.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제6장 제2절> 4.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6장 제3절> |

○ 레저선박 해양사고 사례와 예방교훈

- | | |
|--|--|
| 사례 1. 낚시어선 A호-모터보트 B호 충돌사건
사례 2. 낚시어선 C호-모터보트 D호 충돌사건
사례 3. 낚시어선 E호-모터보트 F호 충돌사건
사례 4. 어선 G호-모터보트 H호 충돌사건
사례 5. 어선 I호-모터보트 J호 충돌사건
사례 6. 낚시어선 K호-레저선박 L호 충돌사건 | 사례 7. 낚시어선 M호-무동력 레저선박 N호 충돌사건
사례 8. 레저선박 O호 침몰사건 |
|--|--|



-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과 밖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법 「해사안전법」
1.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일반원칙
해상례자를 줄이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충돌회피동작은 적극적으로!!



* 상선이 전진 중 후진기관을 사용해 멈추는 데 걸리는 거리는 선박 길이의 약 6-8배(대형선은 약 10배), 전파에 원거리로부터 90도 변경하는 데 걸리는 거리는 선박 길이의 3-4배
 일정 큰 상선은 급박한 충돌위험에 즉각 대응할 수 없습니다. 상선과 마주치면 내가 먼저 피항동작!

2.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좁은수로
좁은수로 안 경박 금지, 오른쪽 끝쪽에서 항행, 20m 미만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을 것!



사례 1 낚시어선 A호 모터보트 B호 충돌사건

관련: 「선박입출항법, 우선피항선 항법, 「해사안전법」, 경계 유지

사고 일시 / 장소

- 2016년 9월 25일 14시 55분경
- 충남 보령항 전부도동으로부터 325도 방향 0.2마일 해상(무역항의 수상구역 내)

사고 개요

- 총톤수 9.77톤 낚시어선 A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오전항으로 귀항하던 중 조타실 전방에서 짐을 쟁기며 오가는 승객들로 인해 진행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시동을 켜둔 채 정류하면서 승선원 3명(모두 낚시 중이던 총톤수 1.03톤의 모터보트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B호는 패션·B호 승선원 등 2명 부상
 *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정보) 흐린 날씨, 복층(초속 4~6m), 파고 약 0.5m, 시정 약 3마일

